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6
----------	------

발의연월일 : 2016. 7. 21.

발의자 : 이재정 · 강병원 · 박광온

윤후덕 · 위성곤 · 윤호중

김철민 · 이학영 · 기동민

이춘석 · 추혜선 · 윤관석

서형수 · 송옥주 · 김해영

황희 · 변재일 · 박남춘

신경민 · 이찬열 · 소병훈

박주민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103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5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

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